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(앞쪽)

1. 기본사항

① 법인명	사단법인 희망의소리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128-82-69905
③ 대표자 성명	정은경	④ 기부단체 구분	지정기부금
⑤ 전자우편주소	hope-0924@hanmail.net	⑥ 사업연도	2019년
⑦ 전화번호	031-907-9059	⑧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9년 12월 27일
⑨ 소재지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53,502호		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(단위: 원)

⑩ 월별	⑪ 수입	⑫ 지출	⑬ 잔액	월별	수입	지출	잔액
전기이월	-	-	0	8월	-	200,500	117,100
1월	-	-		9월	700,000	676,900	140,200
2월	1,300,000	1,210,400	89,600	10월	1,000,000	1,046,010	94,190
3월	-	-	89,600	11월	2,000,000	2,074,400	19,790
4월	1,000,000	800,000	289,600	12월	3,400,000	3,420,790	0
5월	-	-	289,600	합계	11,300,000		
6월	1,200,000	671,000	818,600	차기이월	-	-	
7월	700,000	1,201,000	317,600				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(단위: 원)

⑭ 지출월	⑮ 지급목적	⑯ 지급건수	⑰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⑱ 금액
2019-02	사업비	4	안종현외	1,210,400
2019-04	사업비	1	가평음악협회	800,000
2019-06	사업비	2	김성민외	671,000
2019-07	사업비	3	이강령외	1,201,000
2019-08	사업비	1	정우석	200,000
2019-09	사업비	1	이강령외	676,900
2019-10	사업비	1	이종수	996,010
2019-10	운영비	1	주유비	50,000
2019-11	사업비	6	이동환 외	2,074,400
2019-12	사업비	9	주혜주외	3,384,000
2019-12	운영비	2	주유비외	36,290
⑲ 연도별	⑳ 지급목적	㉑ 수혜인원	㉒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㉓ 금액
합 계		30		11,300,000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(단위: 원)

⑳ 지출월	㉑ 국가명	㉒ 지급목적	㉓ 지급건수	㉔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㉕ 금액

㉔ 연도별	㉕ 국가명	㉖ 지급목적	㉗ 수혜인원	㉘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㉙ 금액
합 계			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2020 년 6 월 28 일

제출인:

희망의소리 정 은경



(단체의 직인)

[인]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

□ 개 요

-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·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(이하 '기부금단체')의 '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'(이하 '의무이행 여부등')에 대하여 **매년 주무관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** [舊법인세법 시행령('20. 2. 11. 개정前) § 39 ⑦, § 38 ⑩]
 -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**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**(이하 '지정취소등') **요청**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 39 ⑧, § 38 ⑪]
 - **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** [국세기본법 시행령 § 66 ⑪ 4호]

□ 점검대상

-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**법정·지정기부금단체** → 명세는 공문 붙임3 참고
- **당연지정기부금단체(종교단체 제외)** → 아래 법령에 따른 단체

<'20년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>

[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① 1호]

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나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
- 다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
- 라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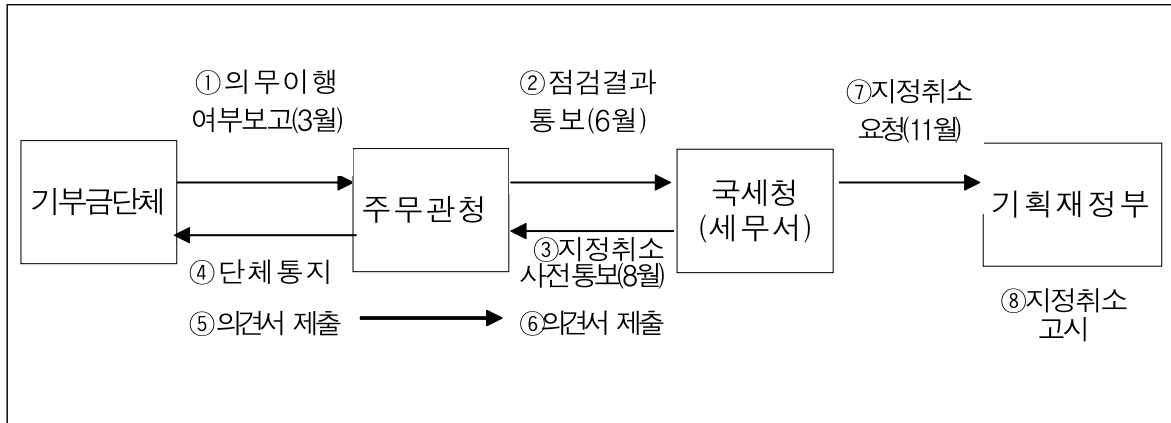
[舊법인세법 시행령('18.2.13.-28640호 개정前) §36 ① 1호]

- 다. 정부로부터 인·허가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단체
- 라. 정부로부터 인·허가 받은 문화·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

* 정부로부터 인·허가 받은 학술연구·장학단체 등은 '18. 2. 13.이후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되었으나, '18. 2. 13. 이전 해당단체는 '20. 12. 31.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,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

□ 점검대상연도 : 2019사업연도

□ 점검절차(예시 : 12월말 법인 기준)



※ ③~⑧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만 해당

① (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) 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등을 매년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보고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⑥, §38 ⑨]

- 기부금단체가 위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은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금단체에 요구 [법인세법 시행규칙 §19 ②]

<기부금단체 의무사항>

(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⑤⑧, §38 ⑧⑩)

1.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(정관에 명시 포함) 등
2.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(정관)
3.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(정관) 등
4.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
5. 기부금단체 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6.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%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
7. 고유목적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
8. 결산서류 등을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(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)
9.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(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)

☞ 1의 괄호내용과 2, 3의 정관요건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되며,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4, 6만 해당됨

② **주무관청의 점검결과 통보**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⑦, §38 ⑩]

주무관청은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 그 점검결과를, 미보고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보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**미보고 사실을,**

- ‘**점검결과보고서**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3의10~12 서식, 참고1)’에 기재하여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**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공문 제출의 방법으로 국세청에 통보**

③④ **지정취소 등 대상 사전 통보**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⑪]

국세청은 주무관청이 통보한 점검결과 내용을 확인하여 지정취소등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**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등을 요청하기 전에,**

- **주무관청에 해당 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등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사유 등을 통보하고,**
-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그 사실 등을 **해당 단체에 통지**

<지정 취소 등 사유>
(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⑧, §38 ⑪)

1.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,000만원 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(가산세 포함)를 추징당한 경우
2. 법인이 목적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하거나, 의무사항을 위반 또는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3.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4. 법인의 대표자 등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
5. 법인이 해산한 경우

⑤⑥ **의견서 접수 및 전달**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⑫]

지정취소 등 대상 통지를 받은 기부금단체는 **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서(참고3)를 제출할 수** 있고, 주무관청은 **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전달**

⑦ 지정취소 등 요청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⑧, §38 ⑪]

국세청장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단체를 **11월 30일***까지
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요청

* 지정기간이 만료된 단체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까지

⑧ 지정취소 고시 [舊법인세법 시행령 §39 ⑬, §38 ⑭, ⑮]

지정취소 등을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단
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지정취
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**12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**

* 지정취소 확인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 > 법령 > '고시 · 공고 · 지침'

□ 점검일정('19년 12월말 법인 기준)

구 분	점검 등 내용	기 한
기부금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이행 여부 등 내용을 주무관청에 보고 	'20. 3. 31.
주무관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기부금단체에 보고 요구 	'20. 6. 1.
주무관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단체의 보고내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하거나 기부금단체의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제출 	'20. 6. 30.
세무서, 지방국세청, 주무관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단체의 관할세무서에서 점검내용을 검토하고, 지정취소 등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취합하여 해당 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에 일괄 통보 주무관청은 지정취소 등 대상 내용을 해당 기부금단체에 즉시 통지 ※ 기부금단체가 통지를 받고 지정취소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	'20. 8. 31.
기부금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취소등 대상 통지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신청 (1개월 이내) 	'20. 10. 5.
주무관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단체의 관할세무서*로 이의신청 내용 전달 (1개월 이내) * 이의신청은 국세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함을 유의 	'20. 11. 2.
국세청 (법인세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 요청 	'20.11.30.
기획재정부 (법인세제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고시 	'20.12.31.

□ 올해 점검부터 달라지는 사항

구 분	종 전	개 정
의무이행 보고 및 점검대상	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* (한국학교,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제외)	기재부장관 지정 기부금단체* (한국학교, 해외지정 기부금단체 포함)
	-	당연지정기부금단체 추가 (사회복지법인, 학교 등)
점검주기	2년	매년
점검대상기간	매년 1. 1. ~ 12. 31.	사업연도
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 보고기한	매년 3. 31.	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
기부금단체 사후관리	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	<좌동>
	-	당연지정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시 명단공개 대상

* '18. 1. 1. 이전에 지정받은 공공기관 등은 종전 규정의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지정기간 동안 의무이행 등 보고 및 점검 대상 ('18. 2. 13. 이후 신규 또는 재지정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대상에 해당)